

2024년 제 ____ 차(____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아래 표의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처리기한: 1일(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주	개인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상호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사무실 연락처 (전화)		(팩스)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규모기업		
파견수급사업장	사용(도급) 사업장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피보험자 수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직·휴업을 이행할 것이며,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

휴직 (고용유지조치) 내용	고용유지조치 기간	____ 년 ____ 월 ____ 일 ~ ____ 년 ____ 월 ____ 일		
	휴직 근로자 수	명	휴직수당 지급 기준	<input type="checkbox"/> 평균임금의 ____ % <input type="checkbox"/> 통상임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 월(____ 년 ____ 월) 매출액이 기준 월 직전 6개월(____ 년 ____ 월~ ____ 년 ____ 월) 매출액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신청일자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약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일자
					년 월 일

고용유지조치 계획(년 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실근무장소
계				명

⑨ 사업주 확인서

- 지원제외 사업주:** 아래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가.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 나. **신규채용금지 의무 위반:**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 **고용보험료 체납**
 - 다. **계절적 휴업:**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라. **과거 고용유지조치 후 6개월 이내 10% 이상 인위적 감원:**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의 전날부터 이전 2년까지의 과거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 고용장려금 등 중복지원 제한:** 우리 부 고용장려금이나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0조의2)
- 계획 이행을 미달:** 사업주가 사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아 그 내용(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 고용유지조치 기간 ·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이행률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이행한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고 시도한 사업주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 및 그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의 추가 반환 및 최대 1년의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현장 조사:** 우리 부 고용장려금 담당자는 귀사의 고용유지조치 이행 적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귀사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및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개인정보 활용 관련:** 신청인 본인은 이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그 당사자들에게 안내하고 수집·활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변경계획 포함)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필수)

본인은 이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함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인이 해당 내용의 입증 서류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성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성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